

입목매각 위탁조사 용역 과업지시서

1. 과업명 : 2026년 입목매각 위탁조사용역(봉평 1차)

2. 목 적 : 국유림의 영급개선과 목재생산 확대로 안정적인 국산 목재
수급 · 관리 및 산업용재의 적기공급, 고부가가치 목재생산을
도모하고자함

3. 과업대상

가. 개 소 :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71임반 1소반 외 3

나. 용역량 : 36.6ha

4. 과업내용

가. 사전조사·확인

- 설계자는 사업대상지가 모두베기 사업지로 적합한지를 검토한다.
- 사전조사 시 임목벌채가 불가능한 제지(암반, 도로, 급경사지, 경작지 등)와
벌채가 제한되는 지역(보호수생육지, 소생물권보호지역, 특이수종생육지와
수변구역 등)을 구획하여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시킨다.
- 사전조사는 고급기술자 1인이 1일 20ha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.

나. 경계표시

- 벌채대상지의 구역경계는 GPS를 활용하여 확정한다.
- 경계는 친환경성 수성 흰색페인트를 이용하여 10m 간격으로 표시한다.
- 경계표시는 초급기술자 1급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1개조가 되어
표시하며, 1일 5ha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.

다. 기계화작업로 선정 및 표시

- “기계화작업로”란 임업기계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2.5m 내외로
개설한 작업로를 말하며, 숲가꾸기 지침 규정을 준용한다.

- 기계화작업로는 1ha 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한다. 이 경우 최대 집재거리는 50m 가 된다.
- 기계화작업로 예정선을 따라 종단경사를 측정하고 20m 간격으로 적색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측점을 추가할 수 있다.
- 기계화작업로 선정 및 표시는 특급기술자 1급과 초급기술자 1인이 1조가 되어 작업하며, 기계화작업로는 1일 1조가 1.0km 선정 및 표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.

라. 입목(제거목)조사

- 입목조사는 표준지 조사(벌채대상면적의 5% 이상)를 원칙으로 하되, 해당 국유림관리소장의 판단에 따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.
-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산록, 산복, 산정부에 고르게 배치하여야 하며,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. 단, 표준지를 1개소만 배치하는 경우, 해당필지의 평균이 되는 지역에 배치한다.
-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$100\text{m}^2 \sim 400\text{m}^2$ ($10\text{m} \times 10\text{m}$, $10\text{m} \times 20\text{m}$, $20\text{m} \times 20\text{m}$ 사각형 또는 반지름 5.7m, 8.0m 11.3m 원형 표준지)로 한다. 표준지 위치는 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록한다.
- 표준지 조사방법
 - 흉고직경은 표준지 내에 6cm이상 교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
 - 수고는 경급별 m 단위로 측정
 -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
 - 존치목은 황색 페인트로 벌목자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앞뒤로 “0” 표시
- 표준지조사는 초급기술자 2인 1조로 실시하며, 1일 0.4ha (400m^2 기준 10개)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.
- 수종갱신 대상지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3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“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”를 근거로 “수종갱신 판정 임분형질 조사야장” 및 “수종갱신 대상 판정 기준표”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우세목 임령이 60년 이상일 경우 수종갱신 판정생략할 수 있으며 임령 조사 자료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마. 조재율 • 품등조사

- 벌채대상목에서 각 경급별로 표준목을 선정하되, 벌채구역 내에 균등히 분포되도록 하고 그 수는 10본 이상 100본 이하로 하되 총 벌채대상목의 0.3%이상으로 하여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를 작성한다.
- 조재율 및 품등조사는 초급기술자 1인과 특별인부 1인, 보통인부 1인이 1조가 되어 실시한다.

바. 잔존목표시

- 벌채지에서 벌채기준 및 갱신 목적에 따라 잔존목을 단목으로 존치시키는 경우에는 황색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하되,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페인트 아래에 적색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.
- 잔존목은 황색페인트로 “0”표시 한다.
- 잔존목의 표시는 초급기술자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1조가 되어 1일 2ha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.

바. 잔존구역표시

- 잔존구역표시란 모두베기를 실행하는 지역의 존치목의 군상 또는 수림대, 계곡부, 산정부, 급경사지와 같이 보호하여야 할 지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. 사업장 경계부에 위치하는 잔존구역은 사업장 경계표시 시 제외하도록 한다.
- 잔존구역의 경계표시는 초급기술자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1조가 되어 1일 10ha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.
- 잔존구역경계는 흰색페인트로 환상 표시한다.

사. 기타사항

- 벌채 예정지 내 야생동물 서식지, 희귀식물 자생지 등 도면작성 및 매목조사 야장 별도 기입한다.
- 기타 위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관서의 장이 가감할 수 있다.

아. 실시설계에 포함될 내용

- 설계설명서 : 설계목적, 대상지 조사내용, 설계적용기준, 사업의 범위 등
- 예정공정표 : 작업원, 작업공정별 작업일수 등
- 대상지 필지내역 : 대상지번, 지적, 사업면적 등
- 시방서 : 일반시방서, 특별시방서, 전문시방서(지황, 임황, 작업방법 등)
- 사업비원가계산서 :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 등
- 설계내역서 : 사업종별·소반별 단가산출 집계
- 단가산출서 : 사업종별·소반별 ha당 단가산출내역
- 수량산출서 : 벌목량, 집재량, 운반량 등 수량집계
- 할인·할증률 조사서 : 경사, 장애물
- GPS 좌표 : 잔존목 위치 등 표시
-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

5. 과업기간: 착수일로부터 30일간

가.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본 사업기간 내 과업이 완결되는 즉시 성과품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용역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관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- 천재지변, 기타 사항으로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
- 관의 사정으로 과업내용(조사대상지 등)에 변동이 생겼을 때

6. 사업비의 관리

가. 사업비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입출금 내역 및 관계 증거서류를 보관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나. 사업비의 지출은 착수 시 제출하는 비목별 관리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다.

다. 모든 지출·입금은 시중은행을 통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7. 과업추진시 주의사항

- 가. 수탁자는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, 착수보고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수탁자는 위탁사업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다. 위탁사업 수행 시 발생한 지적재산권, 저작권 등은 모두 위탁기관에 귀속된다.
- 라. 수탁자는 위탁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세부지침 등을 숙지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마. 위탁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.
 -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 - 위탁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
 -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- 바. 본 위탁사업의 준공 전·후를 막론하고 위탁비가 과다하게 계산되었거나,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정산 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.
 - ※ 수탁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며,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위탁기관의 수정·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보완 또는 재설계 하여야 한다.
- 사. 수탁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80%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.
- 아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,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할 경우도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.
- 자.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,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
8. 과업의 안전관리

- 가.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안전·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하고, 안전사고 예방 조치, 주기적인 사업장 안전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·점검한다.
- 나. 작업 현장 근로자 개인별 안전장구(안전모·복·화 등) 착용을 의무화한다.
- 다.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